

보도자료			
배포일시	2021. 12. 8.(수) 조간 * 인터넷 2021. 12. 7.(화) 12:00 이후 / 총 4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과 장 양현수 사무관 이철호	044-202-8901 044-202-8904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제11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(12.8.)

- 중소기업 건설·제조업 외 현장실습생 참여기업, 50~99인 제조업도 점검 -

-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업의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준비상황 확인·홍보, 현장실습생 참여 사업장 일부 점검
- 7~11월 23,000여 개 중소기업 건설·제조업 현장점검 결과, 15,000여 개 현장에서 개인보호구 미착용 1만여 건 적발

* (개인보호구 미착용 현황) ▲건설현장 9,837건, ▲제조업 971건 → 점검 강화예정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12.8. '제11차 현장점검의 날'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전국에서 동시에 점검한다고 밝혔다.

* ▲(현장점검의 날) '21.7.14.부터 격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점검, ▲(내용) 3대 안전조치<① 추락사고 예방조치, ②끼임사고 예방조치, ③개인보호구 착용> ▲(조치) ①시정지시, ②불량사업장은 불시감독

□ 이번 점검(12.8.)에는 '22.1.27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, '중대재해처벌법'이라 함)」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업과 현장실습생 참여 사업장 일부를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이다.

○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적용 대상이지만 비교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준비상태를 확인하면서 해설서 등을 배포하는 등 홍보와 지도를 병행한다.

-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10차례 「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」 일제점검(23,473개소 점검, 15,108개소 위반)에서
 -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중소기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,808명(건)을 적발했다.
 - 업종과 규모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10억 원 미만, 제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발 비율이 각각 73.9%, 84.5%로 대부분을 차지했다.

건설업 (7~11월)	점검 사업장	위반 사업장	개인보호구 미착용	제조업 (7~11월)	점검 사업장	위반 사업장	개인보호구 미착용
계	17,316개소	11,709개소	9,837건	계	6,157개소	3,399개소	971건
3억 미만	4,451개소	2,963개소	2,712건	10인 미만	2,317개소	1,284개소	394건
	25.7%	25.3%	27.6%		37.6%	37.8%	40.6%
3억~ 10억 미만	6,778개소	4,926개소	4,551건	10~29인	2,659개소	1,574개소	426건
	39.1%	42.1%	46.3%		43.2%	46.3%	43.9%
10억 이상	6,087개소	3,820개소	2,574건	30~49인	670개소	369개소	100건
	35.2%	32.6%	26.2%		10.9%	10.9%	10.3%
				50인 이상	511개소	172개소	51건
					8.3%	5.1%	5.3%

□ 고용노동부는 이번 「제11차 현장점검의 날(12.8.)」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이전보다 특히 강화한다고 밝혔다.

-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50인 미만(50억 원 미만)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
- 근로자가 개인보호구까지 착용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이다.

□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“기온이 낮은 동절기에는 눈이나 비에 의한 결빙(살얼음)에 의해 건물 밖 철제·대리석 계단과 작업 통로 등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”라고 하면서

○ “떨어지거나 넘어질 때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,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대,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안전화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”라고 했다.

○ “22.1.27.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자부터 경영책임자까지 기본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마련·작동되어야 하고, 구성원 모두가 이를 착실히 준수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□ 한편 고용노동부는 「제11차 현장점검의 날(12.8.)」의 점검 대상인 2,000여 개 건설·제조업 등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'특별방역현장점검'도 병행할 방침이다.

붙임 추락·끼임 사망사고 예방 홍보물 1부. 끝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사무관(☎044-202-8904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추락·끼임 사망사고 예방 홍보물

작은 설비에 끼여도, 낮은 높이에서 떨어져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.

제조업에서 사망한 10명 중 5명은 끼이거나 떨어져 사망

* 최근 5년간 1주일에 2명씩, 총 520명이 끼이거나 떨어져 사망

지금 바로 주위를 둘러보세요



재해 사례

끼임 재해	<p>1 작동하고 있는 기계를 청소하다 가슴이 끼여 사망</p>	<p>2 움직이는 설비에 작업복이 걸린 후 머리가 끼여 사망</p>	<p>3 재물 검사 중 산업용 로봇과 재물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</p>
	<p>1 1.2m 높이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</p>	<p>2 1.5m 높이 자재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</p>	<p>3 사다리로 내려가다 2.4m에서 떨어져 사망</p>
	추락 재해		

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할 사항

<p>정비·청소·검사·수리·교체 작업</p> <p>① 점검 수리 중 전원 차단 ② 스위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③ 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</p>	<p>끼일 수 있는 곳 방호장치</p> <p>① 동력기계, 회전축 등에 덮개 등 설치 ② 방호장치 해체 금지 ③ 동력용인 기계에 직접 접촉 금지</p>	<p>떨어질 수 있는 곳 안전조치</p> <p>①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/ 안전난간 설치 ② 개구부 덮개 설치 ③ 안전대 착용 및 부하설비 설치</p>	<p>개인보호구 착용</p> <p>① 안전모: 추락물체 낙하 등 위험 작업 ② 안전대: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③ 안전화: 끼임, 발제 넘어 등 위험 작업</p>
--	--	--	---

콘텐츠 링크 ※자료영상을 클릭하면 홈페이지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

안전보건자료실 검색 '끼임' 또는 '추락' 또는 'VR' 용 입력
포털사이트에 안전보건공단 입력 또는 주소창에 <https://www.kosha.or.kr> 입력

